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 도입

환경부 기술 지원과
행정 사무관 김상훈

1. 머리말

환경 정책은 정부, 국민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국토 개발, 공단 조성 등 대 단위 개발 사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 또한 일상생활을 통하여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등 환경에 부담을 준다. 한편 기업은 그 속성상 신 기술 및 신제품 개발, 경쟁과 성장 지향의 생산 활동을 통하여 대량이며 고밀도의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산업계에 대한 환경 정책은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것과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오염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자이며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여 그 해결 능력을 아울러 갖고 있으므로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문제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업계에 대한 주된 정책 수단이라 할 배출 허용 기준의 설정과 그에 수반된 배출 부과금 제도가 농도 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억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 현재 최종 처리(end-of-pipe)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환경 관리 관행과 정부의 산업계에 대한 환경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배출 허용 기준 이내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생산 전 과정에 걸친 환경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를 도입,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의 정의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란 기업이 환경 규제치 준수에 그치는 기존의 소극적인 환경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환경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적극적 경영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 체제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환경이 기업 경영의 한 요소로서 최고 경영자는 물론 전직원의 참여 하에 제품 설계부터 원료 투입, 생산 및 오염물질의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엄격히 평가·관리·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환경성 평가, 환경 개선 계획 및 환경 관리 체제 구축 세가지이다. 환경성 평가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 설계부터 원료 조달·투입, 생산 및 사후 처리까지 사업 활동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수, 유독 물질, 에너지 및 원재료 등의 투입 규모와 특성, 생산 공정 및 공법의 환경 영향, 대기·수질·폐기물 등 배출되

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 그리고 방지 시설의 종류, 용량, 효율 등이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평가된다. 환경 개선 계획은 환경성평가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기업이 스스로 우선 순위를 매겨 개선하고자 정한 목표와 그 달성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구체적인 오염 저감 목표와 달성 방법, 투자 계획 및 일정 등이 명시된다. 이를테면 환경 개선 계획에는 '96년까지 '95년 기준으로 폐수를 10% 줄인다거나, 폐기를 재활용률을 10% 제고하는 등의 정량적인 개선 목표가 있을 수 있고, 개선 방법으로는 제품 설계를 달리하거나 관리 개선, 공정 개선, 방지 시설 개선, 또는 현장재이용(on-site recycling)등 방지 시설 개선 이외의 다양한 수단을 통할 수 있다. 환경 관리 체제란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 관리를 최적화 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 기능 배분 및 업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환경 보전 기본 원칙, 전 조직의 환경 관련 역할과 책임, 교육 및 훈련, 부적합 사항 시정 및 예방 조치, 내부 환경 감사,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책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환경 부서는 물론 생산 부서 등 전 조직의 환경 관련 역할과 업무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다.

3.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의 도입 필요성

산업계에 이 체제를 보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환경 현실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어 기업 활동에 따르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고 그나마 상당 부분이 산지여서 가용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나 과다한 인구로 기본적인 환경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우기 '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최우선의 국가 목표로 설정하여 급속한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환경 부문이 소외되어 그 동안 누적되어 온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국가의 기간산업이 화학, 철강, 금속, 전자, 자동차 등 오염 부하가 큰 중화학 공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의 성장 전략 또한 제조업 중심의 대외 교역 확대에 기초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환경문제가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장래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환경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염 부하가 적은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도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 여건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법정 기준치 이하까지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를 보급하고자 하는 두번째 이유는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의 적용을 포함한 생산 전 과정에서의 예방적 환경 관리가 사후 처리보다 효율적이라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사후 처리와 청정 기술의 경제성을 비교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기간 청정 기술에의 투자 비용이 사후 처리보다 과다하게 나타나지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청정 기술에 의한 생산비용이 오히려 저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3M에서는 일찍이 3P(Pollution Prevention Pays)를 내세워 '75-'92년까지 오염 물질 감축과 누수량을 줄여 6억5천만불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WTO 체제 출범 이후 논의되고 있는 환경 상계 관세, 생산 공정 및 방법(PPMs :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그리고 ISO 14000 series등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능동적 대처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를 산업계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의 대응 방안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계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 설정 등의 획일적이고 정태적인 정책 수단의 한계를 벗어나 기술과 자본, 인력 등을 보유하여 역량 있는 기업의 수준에 상응하는 엄격한 환경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업 활동에 따라 환경에 야기되는 오염 부하를 줄이자는 데 있다. 따라서 신청 기업을 환경 친화 기업으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근본적인 기준은 해당 기업이 야기하는 환경 영향이 법적인 기준이나 지역사회의 환경 용량, 생산품목이나 생산량, 동종 업계의 국내외 환경 부하 수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우수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의 여부 - 환경 성과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 친화 기업 지정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최고 경영진의 근본적인 환경 인식 전환을 들 수 있다.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이겠으나 환경이라는 문제는 특히 사업 활동의 전 영역에서 야기되고 전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환경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을 통제·조정하여야 하고, 필연적으로 전 조직 및 인력을 통솔하여야 한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는 문제가 최고 경영진의 관심 분야에 포함되어 마치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 절감, 시장 점유율 확대 등과 같은 경영의 요소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래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여 온 것처럼 환경이라는 문제를 생산이나 여타 기업 활동과 유리된 부문으로 인식하여, 전담 부서의 설치로 오염 물질을 '처리'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 그렇게 대응한다면 거기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간 현행 배출 허용 기준 제도가 농도 규제 방식의 기준 충족만을 요구할 뿐 그 이상의 노력에 대하여 아무런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결함을 지녀 근본적인 환경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는데 무력하였다.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는 배출 허용 기준과 같은 필요 최소한의 기준 충족에 머무는 제도가 아니므로 한 차원 높은 환경 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동태적으로 지속하려면 필연적으로 투자, 인사, 기술개발 등에 있어서 최고 경영진의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하게 된다.

최고 경영자의 근본적인 환경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사적 환경 관리 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각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져 제도화된 환경 관리를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ISO14000이나 BS7750 등의 환경 경영 규격의 획득은 권장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 친화 기업 지정을 위해서 이러한 규격의 획득이 필수적이라거나, 규격인증만 얻으면 곧바로 환경 친화 기업으로 지정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 성과에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 관리

체제의 구축이나 규격인증 등은 환경 성과 도달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의 주된 관심은 어디까지나 환경 부하의 저감이라는 환경 성과에 있지 그 수단이라 할 환경 관리 체제의 구축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 관리 체제의 구축은 ISO 14000 이나 BS 7750에서와 같이 정치하고 방대하게 문서화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 경영자의 환경 인식 전환이나 전사적 환경 관리 체제의 구축으로 기본적 여건이 마련된 기업이라면 이제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활동에 따라 야기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확충하여 오염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내보내거나 공정 자체를 변화시켜 오염물의 생성 자체를 줄이든지 방법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업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후 처리 방식이 앞서 지적인 '배출 허용 기준' 식의 느슨한 제도의 산물이고, 국내외의 경험과 연구 결과가 청정 기술 (clean technology)의 적용을 통한 공정 자체의 원천적인 오염 저감 (reduction at source)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단 야기된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사후 처리 방식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청정 기술개발 및 도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심사시 이를 우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실령 환경에 미치는 오염 부하가 같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정 기술을 적용한 사업장이 사후 처리 중심의 사업장보다는 심사에 있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태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이다. 사실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없는 것이 최선이고 보면 기업은 배출 허용 기준의 충족에 머물지 않고 그 실정에 비추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법규나 제도만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준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오염 부하를 줄이도록 유도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는 심사 요건에 구체적인 환경 개선 계획 및 투자 규모, 일정 등을 제시하게 하므로써 지속적이고 동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이러한 제도적인 불비를 보완하면서 역량 있는 기업의 끊임없는 오염 부하의 저감을 촉진하고 있다. 환경 친화 기업 지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오염 부하를 낮추는 것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오염배출량에 기초한 배출 부과금 제도로의 개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앞선 노력이 향후 제도개편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투자로서도 기능 하게 될 것이다.

환경 친화 기업의 지정에는 비단 사업장의 환경 관리 및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활동의 환경 친화성이 심사된다. 여기에는 해당 업체가 어떠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경우 대응 방식은 적절한지, 지역사회 내의 하천이나 산 가꾸기 등 기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사의 환경 관련 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있는지, 협력 업체의 환경 관리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공조 체제 구축이나 환경 관리 현황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환경친화적 제품이나 재활용품 등의 개발이나 사용은 충실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된다. 이로써 기업이 실제적인 오염 저감이나 환경 관리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전 조직원의 환경 인식 제고를 통하여 환경 친화 기업으로서 근본적인 자세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5. 결론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는 매년 높은 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쾌적한 환경질을 유지하는데 미흡한 농도 규제 중심의 현행 배출 허용 기준과 그에 파생된 배출 부과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울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의 문제를 연계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의 보급을 계기로 산업계에서 생산 단계부터 오염 저감 노력을 기울여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가 저오염부하형, 환경 친화형으로 옮겨가는 데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환경 현실을 개선하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산업의 총체적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환경 친화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공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하여 많은 기업의 참여와 그 안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환경 정책 목표의 달성을 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체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당분간 절대평가를 위주로 하여 일반적인 환경 관리 우수 업체를 지정해 가되,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업종별 환경 관리 현황 및 환경 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동종 업종간 상대 평가를 가미하여 같은 업종 안에서 환경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직원의 환경 인식 전환,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혁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